

순자본비율 및 잉여자본 공시

(백만원, %)

구분	2026.03	2025.12 ³⁾
영업용순자본 (A)	12,032,090	11,239,749
총위험액 (B)	7,277,039	6,607,140
필요유지자기자본 (C) ¹⁾	134,925	134,925
순자본비율 ((A-B)/C × 100) ²⁾	3,524.2%	3,433.5%
잉여자본 (A-B)	4,755,051	4,632,609

1) 인가업무 및 등록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의 70%임

2) '16년부터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순자본비율 산출(분기단위) 시행

3) 2025.12 '순자본비율'은 IMA(종합투자계좌) 관련 회계정책 변경효과를 고려한 연결 재무제표 재작성을 반영함 (3,437.1% → 3,433.5%)

※ 2026년 3월말 순자본비율 및 잉여자본은 회계검토 後 수치임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장 제1절 제30조 (재무건전성 유지) ③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